

【 2014.12.26(금) 건설경제 】

내년부터 기업 '투자·임금인상·배당' 안하면 과세

# '업무용 건물 신·증축비' 투자로 인정

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업소득 환류세' 대상  
건설사 150개 안팎 될 듯

이른바 '사내유보금 과세'로 불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 인정 범위에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부지가 포함된다.

또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나 법인세 과세를 이연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 밝혔다. ▶관련기사 3·15면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유도를 위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부 과세 기준을 과세대상 등을 규정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가본부 500억원 초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속 법인으로 한정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추정한 적용대상 기업은 모두 700여개 수준으로, 이 중 건설사는 150개 안팎이 될 전망이다.

과세방식은 당기소득의 일정 수준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을 뺀 나머지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한다.

기업들은 여전에 따라 투자포함(a)과 투자제외(b) 중 한 가지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투자포함 방식의 기준율은 80%, 투자제외 방식은 30%로 설정했다.

투자로 인정하는 범위에는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이 포함된 반면 해외투자·지분 취득은 제외된다.

특히 유형고정자산 중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업무용 건물 신·증축용 부지가 투자로 인정된다.

일반토지, 기존 건물, 중고품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투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 2014.12.26(금) 강원일보 】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최근 양양군청을 방문해 후진 양성을 위한 양양군 인재육성장학금 500만원을 김진하 군수에게 기탁했다.

설명했다.

업무용 평정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임대주택 리츠의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양도세·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임대주택 리츠 요건 등이 신설됐고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매입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을 허용해 민간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 외에도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의 경우 토지 변동 면적이 전체의 20% 이내이면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등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